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유로주식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위험등급: 3등급	위험등급: 2등급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투자신탁은 연환산 표준편차(최근 결산일 기준,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 기준)가 12.65% 로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 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 하락과 환율변동에 따른 원본 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,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투자신탁은 연환산 표준편차(최근 결산일 기준,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 기준)가 24.93% 로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 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 하락과 환율변동에 따른 원본 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,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	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 1코노미 혁신 트렌드 증권 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부책임: 김경민	부책임: 삭제
	위험등급: 3등급	위험등급: 2등급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투자신탁은 연환산 표준편차(최근 결산일 기준,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 기준)가 14.56% 로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 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 하락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,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투자신탁은 연환산 표준편차(최근 결산일 기준,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 기준)가 22.71% 로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 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 하락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,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	

- KB 액티브 인베스터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김경민 부책임: 강은표 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책임: <u>강은표</u> 부책임: <u>삭제</u>

- KB KBSTAR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18. 생략</p> <p>1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나. KB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18. 좌동</p> <p>1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나. 삭제</p>
	<p>제16조(투자목적)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6조(투자목적)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2. 생략</p> <p>3.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</p> <p>4.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(제3호 및 제4호를 이하 “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p> <p>②생략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2. 좌동</p> <p>3.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(이하 “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p> <p>4. 삭제</p> <p>②좌동</p>
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조 제19호 나 목에 의한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</p> <p>2. 생략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이상으로 한다. (단서 삭제)</p> <p>2. 좌동</p>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생략</p> <p>4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좌동</p> <p>4. 삭제</p>

	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.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5. 삭제
투자설명서	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▣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두자신탁(주식)	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▣ KB 중국 A주 그로스 증권 모두자신탁(주식) 장외파생상품 삭제
	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 KBSTAR 중국 MSCI China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</p> <p>2.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(제1호 및 제2호를 이하 “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p> <p>3. ~ 9. 생략</p> <p>②생략</p> 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생략</p> <p>4.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6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7.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</p> <p>8. 생략</p> 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생략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7호, 제19조 제2호 본문, 제3호 가 목 및 라 목,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</p> <p>2. 삭제</p> <p>3. ~ 9. 좌동</p> <p>②좌동</p> 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좌동</p> <p>4.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6. 삭제</p> <p>7. 삭제</p> <p>8. 좌동</p> 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좌동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7호, 제19조 제2호 본문, 제3호 가 목 및 라 목,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</p>

	<p>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③제19조 제2호 본문, 제3호 가 목,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생략</p>	<p>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작동</p> <p>③제19조 제2호 본문, 제3호 가 목, 제4호 내지 <u>제5호</u>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작동</p>
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	

2. 변경(예정)일: 2021년 03월 25일(목)